

그러면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 意見聽取 9件에 대하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각각 採擇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9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안전제출 : 26건(금회기 26건, 전회기 없음)
 ○상정건수 : 26건

○안전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18	'95. 8. 8	'95. 8. 9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1)	보 류
19	'95. 8. 8	'95. 8. 9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1)	의 결
20	'95. 8. 8	'95. 8. 9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1)	보 류
21	'95. 8. 8	'95. 8. 9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1)	의 결
57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58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59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0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61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2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2. 9.22)	보 류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63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4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5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6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67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8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69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70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71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72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의 결
73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74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75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76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77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78	'95. 9. 6	'95. 9. 7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9.22)	보 류

<p>2. 상정일자 ○주택국(총 4건)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9.21) 상정, 심사 ○도시계획국(총 22건) 제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9.22) 상정, 심사</p> <p>3. 제안이유 및 요지 ○제안설명자: 주택국장 양갑(주택국소관 4건) 도시계획국장 최재범(도시계획국소관 22건)</p> <p>가. 제안이유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안건별내용 별첨</p> <p>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안건별내용 별첨</p> <p>5. 심사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9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지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였고, ○17건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 후 처리키로 하고 보류하였음.</p> <p>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안건별 심사결과</p> <p style="text-align: center;">시 결정(지정)안과 의견이 같음 (9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70%;">19</td> </tr> </table> <p>1. 건 명 :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p>	의안 번호	19	<p style="text-align: center;">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 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위치: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내용 • 면 적 : 14,569㎡(국·공유지 4,829㎡, 사유지 9,740㎡) • 건축물 : 180동(유허가 95동, 무허가 85동) • 세대수 : 379세대(가옥주 181, 세입자 198)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일부2종미관지구 • 주민동의율 : 토지 87.9%, 건물 81.6%</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마포구 신공덕동 2-264번지 일대 국공유지 4,829㎡와 사유지 163필지 9,740㎡ 등 14,569㎡에 새로 신공덕 제3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구역에 정지에는 180필지의 토지가 있으나 20평 전후의 적은 필지들이고 지역내 180동의 건물도 20년 전후의 구식 노후 건물들이 집합되었으나, 지역내에는 차량의 진입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필지들이 적어 재건축에도 적당치 않아, ○지역주민들이 토지는 87.9%, 건물은 81.6%의 동의를 받아 이 지역 일대를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이 구역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시 지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3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70%;">21</td> </tr> </table> <p>1. 건 명 :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2. 제안이유 : 사당 제6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일부해제)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위치: 동작구 사당동 105-14번지 일대</p>	의안 번호	21
의안 번호	19				
의안 번호	21				